

제 228 호

1972. 5. 1.

등록번호 : 제 39 호

등록년월일 : 1953 년 6 월 18 일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인 : 공보실장 손활수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시보

이 영구보존문자는 판

권으로 발행하

1972. 3. 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차 례

사 경 1 공 고 3

1.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시 보 세 분 목 차

1. 사	령		1
2. 공	고		3
제 83 호	환 지 제 회		3
제 84 호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에정지 지정지 일부변경		3
제 85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3
제 90 호	분묘이장공고		4
제 94 호	환지계획 변경공고		4

사 령

◎ 1972. 4. 5

중구보건소 조건부지방간호기사보 박수련
지방간호기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2. 4. 28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양영규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자동차 정비창 지방기계기사보 신철호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토목기원 박춘식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 1972. 4. 26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안기호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2. 3. 1

용산구보건소 조건부지방의무기좌 이정옥
시보근무를 명함.

(72.3.1 ~ 72.4.30)

지방의무기좌에 임함

(72. 5. 1)

5 호봉을 급함.

◎ 1972. 4. 5

건축과 조건부지방건축기사보 김분란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건축과 근무를 명함.

◎ 1972. 4. 5

용산구 조건부지방행정주사 정옥주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72. 4. 10

건설부 조건부전기기사 김홍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조건부 지방전기기사에 임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 1972. 4. 15

개량과 지방토목기사 남재덕
조달청 전출을 명함

◎ 1972. 4. 17

중구 지방교환원 박영자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 1972. 4. 18

업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감만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2. 4. 18

인사과 행정주사보 이종환
철도청 전출을 명함

◎ 1972. 4. 20

청소제 2 과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황철민
시보 근무를 명함

(72.4.20 ~ 72.6.19)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72. 6. 20)

5 호봉을 급함

◎ 1972. 4. 21

기한부공무원 (지방토목기원

차 영 조 148

보 송근백의 군복무 휴직기간중)

에 임함

5급 4호봉을 급함

구획정리제 2과 근무를 명함

◎ 1972. 4. 21

포장과 지방토목기사 양병판
월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2. 4. 21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기사 김영응
서울운동장 근무를 명함

뚝도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원보 서경석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원보 김상호

뚝도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 1972. 4. 21

종로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최 기
월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2. 4. 21

종로보건소 지방간호기사 여지승
월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2. 4. 21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정승길
복직을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2. 4. 26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김환익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명함

구의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신덕현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명함

◎ 1972. 4. 25

연료시험소 지방화공기원보 장홍숙
연료과 근무를 명함

◎ 1972. 4. 26

서대문구 지방건축기사 이은학
(서대문구건축과장)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위를

해제함

◎ 1972. 4. 27

우 신 숙

조건부지방간호 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박 재 영

조건부지방간호 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 1972. 4. 28

이동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구순자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이동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김해순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조연희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정신병원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신영애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 이순녀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박종연

동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약무기사보 이달수

의약과 파견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정영순
영등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 1972. 4. 29

동대문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장종성
(방역과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83 호

환 지 계 획 공 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제 55 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공고함.

2. 환지계획변경 관계 도서는 당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있음

1972. 4. 1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84 호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에정지 지정지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경인토지
구획정리지구내 거점개발을 위하여 동
사업지구내 일부토지를 구획정리사업
법 제 46 조 및 제 47 조 규정에 의
거 별첨 도서와 같이 환지에정지

지정지에 대하여 계획변경을 수립하
고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2. 별첨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과에 비치함.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2. 4. 1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 납입의자
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지 않아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주소 또는 주소 성명 : 성북구만리동 1

153 - 11

오익선의 8 평

별첨조서 참조

2. 구 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2 년
수시분

가. 납부기간 : 72. 5. 15 까지

나. 납부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1972. 4. 20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제 납 자 공 시 송 달 조 서

(분)

72.

수납 번호	지구별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액	납 부 자		비고
		동	번 지	평 수			주 소	성 명	
231	도봉	도봉	283	41	3.40	47,742	만리동 1 가 153-11	오익선	

150

수 번 호	지 구 별	물 건 지			과 도 평	청 산 금 액	남 부 자		비 고
		동	번 지	평 수			주 소	성 명	
264	도봉	도봉	419-5	41	18	127,296	수유동 567-15	이 정	
272	"	"	103-4	300.50	0.30	4,085	홍제동 344-27	홍내군	
305	"	"	91-61	22	1.20	8,620	도봉동 91-61	이흥민	
319	"	"	91-74	19	1	8,048	여주군점동면청단리 219	이평산	
364	"	"	91-86	10	17	158,882	도봉동 169	한영산	
341	"	"	91-27	12	2.50	18,230	" 91-27	전영신	
374-1	"	"	96-85	4	1.60	10,830	" 96-12	이기수	
374-10	"	"	96-93	4	1.60	10,830	" 89	최배진	

◎서울특별시공고제 90 호

분 묘 이 장 공 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급변 시공중인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지역내에 매장된 분묘에 대하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장할 것을 공고함.

1. 이장 대상 지역

가. 성동구 길동, 천호동, 성내동, 고덕동, 문촌동 등 일대

2. 이장기간: 1972.4.24 ~ 72.5.24

(1개월간)

3. 분묘연고자 신고기간: 1972.4.24 ~ 72.5.24 (1개월간)

4. 이장요령

가. 묘지 연고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75-6290) 또는 현장 감독원 사무실에 출두하시어 분묘 등록과 동시에 이장하시기 바라며 이장후 소정의 이장비를 수령하시기 바람.

나. 위 기간내 이장치 않은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당사에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장하겠아오니 이점 해량하시기 바람.

5.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직통 75-6290)에 문의하시기 바람.

1972. 4. .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94 호

환 지 제 획 변 경 공 고

1. 당시가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구획정리사업법 동법제 47조 및 제 55조 규정에 의거 환지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있음.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미수
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2. 4. 28

서울특별시장